

14 (第68回－文化教育第1次)

<p>그리면 서울特別市教育監이 提出한 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p> <p>(「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p> <p>(議事棒 3打)</p> <p>.....</p> <p>(參 照)</p> <p>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항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8. 10,000원 (도표제1호)중 “10원 갈색”을 삭제하고, 후단에 “10,000원 보라색”을 추가한다.</p> <p>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p> <p>3. 서울特別市中學校無試驗入學抽籤方法과學校群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서울特別市教育監提出)</p> <p>(11時 12分)</p> <p>○委員長 李詒鎬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中學校無試驗入學抽籤方法과學校群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을 上程합니다.</p> <p>(議事棒 3打)</p> <p>먼저 教育廳 關係公務員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p> <p>○中等教育局長 權榮燦 中等教育局長 權榮燦입니다. 서울特別市中學校無試驗入學抽籤方法과學校群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p> <p>廢止理由는 現行 서울特別市中學校無試驗入學抽籤方法과學校群에關한條例는 中學校無試驗入學抽籤 方法과 學校群에 關한 것으로서 教育法施行令에 依據 廉止하려는 것입니다. 이 教育法施行令은 93年 11月 13日 大統領令으로 改正이 된 것입니다.</p> <p>主要骨子는 서울特別市中學校無試驗入學抽籤方</p>	<p>法과學校群에 關한條例를 廉止하고자 하는 内容이 되겠습니다.</p> <p>廢止根據는 教育法施行令 第69條第5項에 의한 것입니다.</p> <p>以上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p> <p>○委員長 李詒鎬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p> <p>○專門委員 鄭文孝 서울特別市中學校無試驗入學抽籤方法과學校群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p> <p>.....</p> <p>(報 告)</p> <p>1. 제안경위 본 조례(안)은 1994년 1월 6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p> <p>2. 제안사유 현행 서울특별시중학교무시험 입학추첨방법과 학교군에 관한조례는 중학교 무시험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에 관한 것으로서 교육법시행령의 개정('93.11.13, 대통령령 제14004호)에 의거 폐지하려는 것임.</p> <p>3. 주요골자 서울특별시중학교무시험 입학추첨방법과 학교군에 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함.</p> <p>4. 근거 교육법시행령 제69조제5항</p> <p>5. 검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조례는 교육법시행령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1971.2.17.조례로 제정, 그 이후 1991.3.25. 제17차의 개정을 거친 조례로서 서울특별시중학교무시험 입학추첨방법과 학교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임. • 1993.11.13.대통령령 제14004호로 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서울특별시중학교무시험 입학추첨방법과 학교군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하면 종전의 규정을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정하여 행정의 간소화 및 능률화를 기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음.
---	---